

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심 사 보 고 서

2026. 3.

법제사법위원회

1. 심사경과

가. 발의일자 및 발의자 : 2024년 6월 19일, 소병훈의원 등 14인

나. 회부일자 : 2024년 6월 20일

다. 상정 및 의결일자 :

제417회 국회(임시회)

제2차 법제사법위원회(2024. 8. 23.) 상정 · 제안설명 · 검토보고 ·

대체토론 · 소위원회부

제429회 국회(정기회)

제3차 법안심사제1소위원회(2025. 9. 19.) 상정 · 축조심사

제433회 국회(임시회)

제3차 법안심사제1소위원회(2026. 3. 30.) 상정 · 축조심사 및 의결

(대안반영폐기)

제4차 법제사법위원회(2026. 3. 30.) 상정 · 소위심사보고 · 찬반토론

및 의결(대안반영폐기)

2. 제안설명의 요지

(제안설명: 소병훈의원)

현행법에 따르면 검사는 스토킹범죄의 원활한 조사·심리 또는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법원에 잠정조치를 청구할 수 있으며,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은 검사에게 그 청구를 요청하거나 사법경찰관에게 검사의 청구를 신청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을 뿐 직접 법원에 조치를 청구할 수는 없음. 또한 법원은 피해자의 보호를 위하여 잠정조치 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두 차례에 한하여 각 3개월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음.

그런데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현 절차에 따른 법원의 잠정조치 결정까지는 평균 2.3일이 소요되므로 긴급한 상황에서 신속한 피해자 보호가 불가하며, 반면 「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에서는 판사가 피해자의 청구에 따라 피해자보호명령 및 신변안전조치 요청을 할 수 있어 피해자 보호에 실질적으로 기여하고 있는 바 스토킹 범죄에 대해서도 해당 제도를 도입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.

또한 접근 금지나 전자장치 부착을 내용으로 하는 잠정조치의 기간은 최장 9개월이므로 판결이 확정되기 전 잠정조치가 먼저 끝나는 경우가 많아 피해자 보호의 실효성이 떨어지고, 미성년자에 대한 범죄에 대해 가중처벌하는 형벌체계에 맞추어 미성년자 대상 스토킹범죄 역시 가중처벌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.

이에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직접 법원에 피해자보호명령을

청구할 수 있도록 하여 그 결정까지 소요되는 시간을 단축하고, 법원이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검사를 통해 경찰서장에게 신변안전조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며, 잠정조치 기간을 최장 12개월까지 가능하도록 연장하고, 미성년자에 대한 스토킹범죄를 가중처벌하여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.

3.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

(전문위원 박동찬)

※ 전문위원 검토보고 참고

4. 대체토론 요지

없 음.

5. 소위원회 심사내용

(법안심사제1소위원장 김용민)

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하고, 동 개정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함.

6. 찬반토론의 요지

없 음.

7. 심사결과

대안반영 폐기